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안)

남양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남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재무관과 남양주시 ○○읍·면 ○○로·길 ○○ (○동) 소재 대표 간에 다음과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남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함에 있어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쌍방 간의 권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대행업체”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시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대행구역에 대한 인계요청이 있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행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수집·운반 구역) ①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구역은 ○○읍·면·동, ○○읍·면·동으로 하되 시가 청소행정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행정구역 조정, 대행업체 평가결과 반영 등)에는 수집·운반 구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필요시 “대행업체”와 협의할 수 있다.

② “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구역 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과 “시”가 필요로 하여 수거를 요구한 생활폐기물은 책임을 지고 성실히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제4조(수집·운반 대상폐기물) “대행업체”의 수집·운반 대상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생활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1. 일반생활폐기물
2. 연탄재

3. 음식물류폐기물
4. 대형폐기물(폐가구 등 지정된 대형폐기물은 제외)
5. 무단투기폐기물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대행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15/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가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도 해약되었거나 “대행업체”의 원에 따라 해약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이행 보증금은 “시”에게 귀속된다.

제6조(적환장의 사용 등) ① “대행업체”는 수집·운반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시”가 지정하는 폐기물은 이패동적환장으로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적환장 사용(적환기 포함)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환장에는 쓰레기가 야적되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적환장 내·외와 운송로 주변 등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적환장에서 폐기물 선별 또는 주변환경 정비를 위하여 “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인원과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사업비 청구 및 대행단가) ① 대행사업비는 매월 말일까지의 수집·운반량을 기준으로 다음달 4일까지 청구하여야 하며, 정상별반입실적에 수집·운반 및 운송 단가를 곱하여 지급한다.

② 대행사업비 청구시에는 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산출내역
2. 일일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3. 보건·안전 및 친절 등 관련 직원교육일지
4. 민원처리대장
5. 사업비를 청구한 달에 지급한 임금내역

③ 정상별 수집·운반 단가 및 수도권매립지 운송 단가는 아래와 같다.

구 분		단 위	금 액	비 고
일반생활폐기물, 연탄재		1,000kg		
대형폐기물, 무단투기폐기물		1,000kg		
음식물	통수거	1,000kg		
	봉투수거	1,000kg		
재활용품		1,000kg		
수도권매립지 운송		1,000kg		

④ 별내택지내 집하장에서 별내클린센터까지 운송단가는 아래와 같다.(미도산업)

구 분		단 위	회당 운송단가	비 고
제1집하장	일반생활	8,000kg		
	음식물	5,000kg		
제2집하장	일반생활	8,000kg		
	음식물	5,000kg		

제8조(장비 및 시설물) ① “대행업체”는 차고지와 사무공간 등을 확보하고 원활한 수집·운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차량)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사무실과 차고지를 남양주시 관내에 두어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장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과 의무) ① “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함에 있어 『폐기물 관리법』 및 『남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청소행정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행업체”는 “시”의 지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체”는 “시”가 추진하는 청소행정에 저해가 되는 어떠한 담합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종업원 등의 담합행위로 인한 문제 발생할 때에는 모든 책임은 “대행업체”에 있으며, 담합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업체 소속 작업원의 수집·운반 구역 전역 또는 일부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거부 및 불성실 행위

2. 대행업체 소속 작업원이 집단으로 “시”의 지시사항에 대한 거부 및 불이행

④ 단합행위 등으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제 때에 수거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는 자체계획을 수립 (타 대행업체를 투입하여 수집·운반 실시 등) 하여 수집·운반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대행업체”가 소유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장비를 강제 동원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대행업체”는 수집·운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쌓여 있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이 날리거나 악취발생, 오수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에는 일반생활쓰레기, 연탄재,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무단투기폐기물 등을 별도의 차량으로 분리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⑦ “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차량의 고장·파손 등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수집·운반 대행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휴무일 등) ① “대행업체”의 휴무일을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휴무일에는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 홍보할 의무가 있다.

1. 법정공휴일, 일요일
2. 근로자의 날
3. 설날과 추석의 당일과 다음 날
4. 휴무일이 3일 이상 연속될 경우 2일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의 기간 중 “대행업체”는 자체 장비와 인력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할 수 있는 기동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준수사항 등) ① “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생활폐기물, 연탄재, 음식물류폐기물, 대형폐기물은 등은 반드시 종량제봉투나 지정된 용기의 사용 등 적정한 방법으로 배출한 것을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2. 수도권매립지와 구리자원회수시설 또는 별내클린센터로 반입하는 폐기물은 반입제한 폐기물과 반입가능 폐기물을 분리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재활용품은 배출자가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종류의 용기 등을 비닐봉지나 마대 등에 혼합하여 배출하여도 수거하여야 한다.

4. 무단투기폐기물은 “시”나 “읍·면·동”의 수거 지시에 따라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처리사항은 제6항의 민원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경고장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생활폐기물 수거 후 배출장소에 남아있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차량에 삽과 빗자루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시”의 지시에 따른다.
 - ② “대행업체”는 수집·운반차량 통행이 곤란한 고지대·주택 밀집지역의 골목길이나 농촌지역의 경우 소형 차량·경운기·손수레 등을 배치하여 위생적으로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 ③ “대행업체”는 수집·운반 차량의 운전원의 경우 해당 장비에 적합한 면허 소지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 ④ “대행업체”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함양과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수집·운반원 정신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시”의 계획에 의한 수집·운반원 교육이 있을 경우 참석시켜야 한다.
 - ⑥ “대행업체”는 접수된 민원사항은 늦어도 다음날까지 처리하고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기록·관리하는 민원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집·운반 구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약금 등) ① “대행업체”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이 적발되었을 때 각 항목에서 정한 위약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위약금은 위약금 처분 달 또는 다음 달 대행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대행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수도권매립지 및 구리자원회수시설에서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text{톤당 운송단가} \times \text{해당 차량의 적재량} \times \text{반입금지기간(일)}$
2. 이패동 적환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제4조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혼합하여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text{톤당단가(혼합반입품목 중 높은 단가)} \times \text{반입량} \times 3$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과정에서 “대행업체” 소속 작업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주민과 문제를 야기 시킨 경우: 1회당 30만원
4. 수집·운반 구역 내 생활폐기물을 적시에 수거하지 않거나 미 수거 등으로 동일민원이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민원발생 1회당 30만원
5. 제9조제3항의 단합행위(중요민원)가 발생한 경우: 일 100만원(단, 미참여 인원의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차감할 수 있다)
5. 적환장 반입시 반입차량 번호 또는 반입성상과 다른 카드 체크시(단, 계량한

당일 위반사실을 적환장 근무자에게 알려서 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차량번호 또는 반입성상을 조정하고 건당 30만원

6. 부정한 방법으로 계근량을 늘리거나 적정하게 위탁받아 수집·운반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이패동 적환장에 반입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해당 차량의 적재량 × 정상별 지급단가 × 5

7. 금품 수수 등 부조리로 민원을 야기 시키거나 적발된 경우: 건당 100만원

8. 추석, 설 연휴 기간 중 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편성된 기동반 1인당 15만원 × 운영기간(일)

② “시”는 제1항의 위약금을 부과할 경우 사전에 “대행업체”에 그 이유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대행업체”은 수도권매립지 또는 구리자원회수시설 반입금지로 인한 제반문제 발생할 때에는 “시”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제반 비용은 “대행업체”가 부담한다.

제13조(양도와 승계) “대행업체”는 계약기간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청을 줄 수 없다. 다만, “시”의 승인을 얻어 양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계약해지) “시”는 “대행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시”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행업체”는 “시”에게 그 손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과 『남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 또는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문제를 야기 시킨 경우

2. “시”의 정당한 지시감독과 시정요구에 불응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대행업체”가 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대행 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4. 차량 등 장비관리 잘못으로 인력 및 장비의 3분의 1이상의 운영이 불가능하여 수집·운반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시”의 시책 결정에 따라 “대행업체”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신뢰이익 보호를 위하여 유예기간(3개월)을 두고 그 기간이 종료된 경우

6.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단,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적정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는 제외한다.(이 경우 적정임금의 판단은 “대행업체”의 전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나 근무시간 등 근무여건을 감안한다.)

7. 위탁받은 대행업무를 포괄적으로 재하청한 경우

제15조(사고책임 등) ① “대행업체”는 대행사업에 관련된 제반사고와 이에 수반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② 1주일 이상 치료가 요구되는 사고발생이나 산업재해로 처리할 때에는 즉시 그 상황을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종사원의 채용 및 처우 등) ① “대행업체”는 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정한 수집·운반원을 채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고용한 종사원의 생활안정 및 복리후생 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탈의·세탁시설 등의 설치)의 설치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체”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반규정과 합의에 의한 지급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장비대여) ① “시”는 원활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별지 목록의 공유재산을 “대행업체”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② “대행업체”는 대여 받은 장비에 대하여 대행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대행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해서 “대행업체”가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③ 대여 받은 장비가 “대행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훼손 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체”는 대여 받은 장비를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의 승낙 없이 개조 또는 변형하여서도 안 된다.

⑤ “대행업체”는 대여 받은 장비를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시”이 지정하는 검사를 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⑥ “대행업체”는 위 각 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는 별도의 방법에 의거 적법 조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행업체”에게 청구 또는 대행사업비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① “시”는 『폐기물관리법』, 『남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행업체”에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무상 필요한 조치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해업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의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상 필요한 조치나 시정을 요구에 대하여 “대행업체”는 즉시 필요한 조치나 시정을 하여야 하며, 금전과 관계되어 환수 등을 요구한 때에는 “대해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해서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계약수정과 변경)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의 판단 또는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사항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내의 인구가 현저히 증감하여 청소구역 재조정 필요가 있는 경우
2. “시”의 청소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구역이 조정된 경우
3. 수집·운반 단가의 변동으로 지출금액의 정산과 수정계약이 필요한 경우

제21조(경과규정) 계약기간 중 “대행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의 중단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 “시”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22조(어구해석)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조문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쌍방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

제23조(계약서의 작성)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와 “대해업체” 쌍방 간 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4조(효력발생)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시행하되, 계약단가의 적용은 2016년 1월 1일자 계근량 부터로 한다.

2016 년 6월 21일

“시”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남양주시제1청사)
남양주시 재무관 인

“대행업체” 남양주시 읍·면 로·길 (○○동)
○○○○(주) 대표 ○ ○ ○ 인

대여 공유재산 목록

업 체 명	차 종	차량번호	연 식	적재량(톤)	비고
계		20대			
대원산업 (3대)	암 룰	82버3555	2011	11.8	수도권매립지 운반차량
	음식물	92어9410	2006	5.2	
	음식물	경기88모1717	2000	5	
금곡산업 (2대)	암 룰	82버3560	2011	11.8	수도권매립지 운반차량
	음식물	92어1880	2007	2	
성일기업 (2대)	암 룰	97어1233	2011	11.8	수도권매립지 운반차량
	음식물	92어9467	2006	5.2	
농경산업 (3대)	암 룰	97어1244	2011	11.8	수도권매립지 운반차량
	암 룰	82버3556	2011	11.8	수도권매립지 운반차량
	음식물	92어9077	2004	5.3	
마석산업 (5대)	암 룰	97어1257	2011	11.8	수도권매립지 운반차량
	암 룰	경기88모1356	1997	4.5	
	룰 온	경기88모1216	1996	4.5	
	음식물	경기88모1706	2000	5	
	음식물	92어9466	2007	5.2	
미도산업 (3대)	암 룰	97어1280	2011	11.8	수도권매립지 운반차량
	룰 온	경기88모1534	1999	4.5	
	음식물	경기88모1718	2000	5	
삼영기업 (2대)	룰 온	경기88모1535	1999	3.9	
	음식물	92어9076	2004	5.3	